



제 1193호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령 제2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2

공 고

- 공고 제2014- 14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 공고 3
- 공고 제2014- 1468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시송달(수현지구 소2-2 호선 도로개설공사) 26
- 공고 제2014- 147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규정 개정(안)입법예고 27
- 공고 제2014- 147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 취 공고 35
- 공고 제2014- 1476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37
- 공고 제2014- 14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 안(안) 열람공고 39
- 공고 제2014- 1481호 「중2-767호선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관 련 보상계획 열람공고 41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46
- 남동구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공고 47

고 시

- 고시 제2014- 111호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공고 52
- 고시 제2014- 112호 도로명주소 고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55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9월 19일

남동구 훈령 제2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구민·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현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합리적인 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① 현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현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제6조(현장의 구성)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3.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현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규제 신고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현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현장의 실천) ① 모든 공무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구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사무실 입구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규제 신고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제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제5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주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고객께서는 규제개선, 애로해소에 대한 의견제출 및 규제 신고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신고 의견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추진단 ☎032)453-2901,2902
 -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추진단)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규제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규제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로 구민과 기업, 구청 간의 신뢰의 민원행정 제공

□ 주요내용

- 규제신고고객에 대한 보호 기본 원칙 (안 제6조)
 -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현장 실천 노력, 소속 직원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실시 (안 제8조)
- 규제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안 제10조)
- 현장이행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안 제12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별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년)**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4.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남동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6. 지정 신청 절차****(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9. 22(월) ~ 9. 26(금) 근무시간 중(09:00~18:00)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1층)
- 비치서류 : 2012, 2013년도 결산서 및 2014년도 예산서

※ 금고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로 갈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29(월) ~ 9. 30(화) 근무시간 중(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및 부수
 - 금고지정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정관(사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
 - 금고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3. 구민이용의 편의성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9	

※ 세부항목 [별표] 참고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 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서 접수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세무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 (☎ 032-453-2362)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3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소계	18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소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http://www.namdong.go.kr>

|| 목 차 ||

I. 금고 지정 신청 개요	2
II.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8

I. 금고 지정 신청 개요

1. 금고의 수
2. 약정기간
3. 지정방법
4. 금고의 주요업무
5. 신청자격
6. 지정 신청 절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8. 심의·평가방법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10. 인계인수
11. 비용부담
12. 기타사항
13. 금고 지정 추진일정

1.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년)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일반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지정

4.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남동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지정 신청 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9. 22(월) ~ 9. 26(금) 근무시간 내(09:00~18:00)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
- 비치서류 : 2012, 2013년도 결산서 및 2014년도 예산서
- ※ 금고 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로 갈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29(월) ~ 9. 30(화)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 지정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
 - 금고 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3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3)	
	소계	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	
	소계	18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소계	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소계	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의 일반원칙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 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인계인수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약정체결 후 인계·인수를 위하여 인계인수 준비단을 구성하고 상호협의 하에 합동근무 실시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금고와 협조하여 세입금 집계, 공과금 납부, 세입사무 처리 등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1.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

12. 기타사항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서 접수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남동구청 세무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 : 남동구청 세무과 세정팀 (☎ 032-453-2362)

13. 금고 지정 추진일정

○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2014. 10월중

○ 금고 지정 : 2014. 10월말 ~ 11월초

○ 금고 약정 체결 : 2014. 11월중

○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필요시) : 금고 약정 체결일~12월

Ⅱ.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금고 지정 신청서류 등을 작성함에 있어, 특히
유의할 사항은 구에서 제시한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를 명확히 숙지하고 신청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시스템·시설
설비계획 등은 당해 신청 법인의 실정에 맞게
작성함.

신청서(제안서) 작성요령

- 금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는 공문 첨부물로 제출하고,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평가항목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색인표 부착
- 제안서는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A4종으로 작성하여 좌철 (A4 이외에는 A4크기로 접음)
- 제안서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 및 외국어를 ()안에 병기하고,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도 제시된 서식이 없는 경우는 자체서식으로 작성하며,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식 하단에 기재
- 평가항목별 내용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고, 평가항목간 중복작성 불가 (평가내용을 2 이상의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제출할 경우, 임의 배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며, 숫자표기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
-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중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의 “1) 구에 대한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은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 내 해당 평가항목란에 부착
- 증빙서류는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등의 자료와 일치해야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별도 구분하여 편철하고 사본 자료는 “원본대조필인”과 “사용인감” 날인
-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시스템·시설 설치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고, 항목의 순서와 취지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점		연락처	☎
	전산실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금고 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13부(원본 1부, 사본12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정관(사본) 1부.
 5. 사용인감확인서 1부.
 6. 각서 1부.

2014년 9월 일

○ ○ 은행

은행장 ○ ○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014. 09. .
관리번호 13- (원본) (사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제안서

○ ○ 은 행

제1장 신청목적과 금고운영계획

- 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 취지 간략히 기재
- 금고 지정시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제2장 신청 법인 현황

1. 법인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인터넷 도메인 기재)

2. 법인개요

가. 연 혁

나. 주사무소 소재지

다. 자본금(납입자본금)현황

(2014.7.31.현재)

(단위:백만원)

자 본 금	주 요 주 주 현 황 (1% 이상)			비고
	주주명	직 업	소유비율(%)	
	대주주부터 작성			

※ 최다 출자자 순으로 기재

라. 대표자 및 임원 현황

(2014.7.31.현재)

성 명	직 책	주요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마. 점포 및 직원현황

(2014.7.31.현재)

(단위: 개소, 명)

구 분	점 포 수			직원 수			비고
	계	지 점	출장소 등	계	정규직	비정규직	
전 국							
인 천							
남동구							

바. 전산실 현황 (규모, 인원, 주전산기 기종 등) (2014. 7. 31현재)

사. 재무상태현황 (2012, 2013, 2014.6월말)

○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제3장 심의 · 평가 서류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신용평가기관

기관별 평가일자	Moody's		S & P		Fitch		비고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2) 국내신용평가기관

기관별 평가일자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비고

주) 1. 가장 최근 신용평가기관 평가기준 (2014. 6월말 기준)

2. 국외신용평가는 Moody's, S&P, Fitch IBCA의 평가에 한함

3. 국내신용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에 한하며 기업신용등급[Issuer(credit)Rating] 기준임

4.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등 증빙서류 첨부(#1)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 %)

항 목 별	비 율			산출근거	비 고
	2012년	2013년	2014.1/4분기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율					
대손충당금 적립율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모든 자료는 대외 공표된 자료를 말함.
 3. 2014.11.22.이후 '총자본비율'은 'BIS자기자본비율'란에 표기
 4. 각 항목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첨부(#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밀봉 후 인감 날인)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

정기예금 예치기간	제안 금리			비 고
	계	COFIX금리(기준)	가산금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	
1년 이상	%	%	%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공시하는 "COFIX 금리(잔액기준)"를 기준금리로하며,
 2014. 7. 31 기준으로 작성
 3. COFIX 금리(잔액기준)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COFIX 금리(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금리(잔액기준)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구 분	제안금리(%)	비 고
공금예금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공금예금 : 남동구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세출계좌, 징수관, 지출원, 법인카드결제계좌, 일상경비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남동구 사업자 번호(구의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각 동주민센터 포함)로 개설된 예금일체를 포함함.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1) 일시차입금 대출금리

구 분	금리(가산금리)	비 고
1회계년도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91일 CD유통수익율' 기준금리에 부가할 가산금리를 제시금리로 표기

3. 향후 남동구 일시차입(일괄여신한도 내 “공공일반자금 대출”- 한도거래 의미) 대출금리를 작성

※ 대출한도는 예산서에 명시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함.

4. 차입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지방채 발행시 대출금리

○ 지방채 발행시 제시금리 : 국고채 금리수준으로의 인수능력 등 인수조건

기 간	기준금리 (A)	가산금리 (B)	대출금리(%) (A+B)	비 고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국고채 3년 기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국고채 5년 기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국고채 10년 기준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기준금리는 2014. 7. 31. 기준시점의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말함
3. 약정체결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
4. 차입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 정기에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에금 만기경과 후 적용할 금리

구 분	*제안금리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비 고
		3개월이내	3개월이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	%	정기에금제안금리 대비 비율(0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	%	
6개월이상 1년미만	%	%	%	
1년이상	%	%	%	

※ 제안금리는 “가”목의 정기에금 제안금리를 말함.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

구 분	기준금리(%) (A)	가산금리(%) (B)	제안금리(%) (A+B)	비 고
수시입출금식예금				

- 주)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으로 하고, 예치기간 및 금액 제한없이 2014. 7. 31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금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함.
3.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기업MMDA(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 변경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3. 구민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구민 이용 편리성

1) 남동구 관내 영업점 현황

(2014. 7. 31일 현재)

연번	개 설 내 역		직원수 (명)	비 고
	영업점명 (지점, 출장소명)	소 재 지		
합계	○○개소			

- 주) 1. 점포명은 본점, 지점, 출장소 순으로 유인점포만 기재
 2.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3.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수치와 일치해야 하며, 증빙서류 첨부(#3)
 4.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농협(수협)과 구분 작성

2) 남동구 관내 무인점포 현황

(2014. 7. 31일 현재)

연번	무인점포명	소 재 지	비 고
합계	○○개소		

- 주) 1. 각 금융기관의 무인점포, 365일 코너 등 주민의 금융거래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현황으로 기계 대수와 관계없이 소재지 당 1개소로 표시
 2.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농협(수협)과 구분 작성

3) 전국 특별, 광역시·도별 영업점 현황

(2014. 7. 31 현재)

시·도별	총 영업점수	비 고
합계	개소	
서울특별시	개소	
인천광역시	개소	
○○○도	개소	
.	개소	

- 주) 1.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지점·출장소를 말하며, 무인점포와 간이점은 제외
 2.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농협(수협)과 구분 작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단위: 건,백만원)

구 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12년							
2013년							
2014.7월말까지							

- 주) 1. 남동구 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연도별 수납 처리실적으로,
전자납부(인터넷 및 무인자동 수납 등) 실적 포함, 증빙서류 첨부(#4)
2. 농협(수협)은행의 경우는 지역농협(수협)과 구분 작성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납부편의 추진실적
(2012년 ~ 2014.7.31)

2) 향후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및 기타 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
- 노동쟁의, 파업 등 금고업무 중단사태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포함)하여 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 및 향후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을 구분 작성하고 발전방향 등을 제시
- 세입·세출업무, 자금운용,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e-호조시스템 과 e-뱅킹과의 연계 등 세출업무분야 시스템 구성도 포함)
- 구와 구 산하기관, 인천광역시간의 연동시스템 구성도 제시 등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1) 금고관리업무 수행경험

○ 전국 특별, 광역, 기초자치단체 금고업무 수행경험 (2012년~2014년)

자치단체명	취급회계명	금고계약기간	비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2014. 7. 31현재 금고 약정 체결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금고 수

- 특별·광역시 : 개시
- 도 단 위 : 개도
- 기초자치단체 : 개단체

※ 금고약정서 사본 증빙서류 첨부(#5)

2) 금고 운영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금고 지정시 금고업무 전담조직, 인력 구성 및 직원 교육훈련계획

○ 금고 지정시 은행 영업점의 행정기관(남동구 산하) 입점(신설)계획

기관명	입점시기	점포개설계획		직원수 (명)	비고
		점포명 (지점명)	소재지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1)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제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과오납금 환급시스템 구축계획 포함)

2)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전산처리능력

○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전산시스템 실태 및 향후 설치운영계획 등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

○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사고,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한 방화벽,

보안인증, 서비스별 접근관리방법, 백업시스템, DR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보안관리 강화대책
 (전산보안시스템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계획 등 포함)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설치일정, 위치, 규모, 인력 운영, 시설장비
 (H/W 및 S/W의 장비 · 프로그램명, 기종 · 수량, 용량 등), 비용부담 등의 설치 · 운영
 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시스템 설치 일정별 공정계획표 포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2012년~2014.7.31)

(단위:백만원)

연도	일자	사 업 명 (관련행사명 등)	수혜대상 (기관, 단체, 개인등)	지원내역(금액)	비 고 (지원목적, 사유등)
합 계		○○건			
2012	소계	○○건			
2013	소계	○○건			
2014	소계	○○건			

주) 1.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내 기관, 단체, 개인에게 기부(지원)한 현금현물, 봉사
 등을 총망라 하여 기재(현물 등은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환산이 어려울 경우 내역 기재)

(예시)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원, 환경보전 및 문화유산 발굴, 체육문화행사 지원 등

2. 연도별로 구분 작성, 증빙서류(영수증 사본 등) 첨부(#6)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1) 구에 대한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밀봉 후 인감 날인) (단위:백만원)

연도별	출연금액	비 고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 1. 연도별 출연금액을 명확한 금액으로 기재

※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인정하고, 향후 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됨.

2.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산투자비용 등은 제외

2) 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특정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

연도별	사 업 명 (관련행사명 등)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 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 1. 국제규모 행사, 전국규모 행사, 지역 체육·문화·축제행사, 특정 프로젝트 등으로 기재

2. 본 특정사업 등 추진계획은 1)에 대한 정책사업 결정, 판단 등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사업명은 향후 구 세출예산 편성시 최종 확정됨.

2014. 09. .
관리번호13- (원본) (사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제안서 증빙서류

○ ○ 은 행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심의·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연번	항 목 별	제 출 내 용
1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 신용평가서 등
2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시 자료
3	3-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관내 영업점 현황 관련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입증자료
4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남동구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처리실적 (건수, 금액) 입증자료
5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2014.7.31현재 금고약정 체결 중인 금고약정서 사본
6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관련 사업별 세부 입증자료 (영수증 등)

각 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며, 추후 금고 지정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 지정 신청(제안)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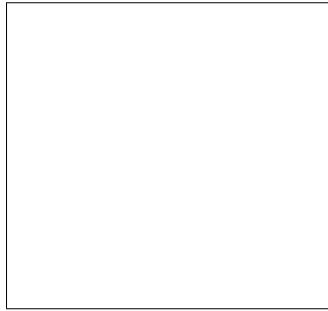
2014. 9. .

○ ○ 은행

은 행 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행 ○○○ 지점장 · 팀장(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성명 기재)가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14. 9. .

○ ○ 은행

은 행 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68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4. 9. 15 ~ 2014. 9. 30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한*교	남동구 장수동 361	18996-8316-8018	반송	수취인불명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정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개정(안)

2. 개정 이유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의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금액을 낮추어 부패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비정상적 처벌 관행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공직사회의 국민적 불신 여론에 따른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범죄보고 의무자 확대 (제 4 조)
 - 범죄보고 의무자를 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에서 소속공무원 으로 확대함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고발기준 강화 (제 6조)
 -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와
 -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고발대상
- 고발 대상 확대 (제 6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고발 의무화

○ 고발시기 단축 (제7조)

-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함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70, FAX 453-2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개정(안) : 별첨

※ 이 규정(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처벌 관행에 대한 정상화 권고에 따라 부패 행위자 처벌에 대한 내부규정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범죄혐의 사실 보고의무자 확대 (안 제4조제1항)
 - 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 → 소속 공무원
- 의무적 고발 대상 기준 강화 (안 제6조제2항)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고발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반드시 고발
- 범죄사실 고발 시기 명확화 (안 제7조제1항)
 -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고발 → 범죄행위사실 확인 즉시 고발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참고 사항

- 형사소송법 및 감사원법
- 공직자윤리법 및 지방공무원법,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조사업무 담당자는”을 “소속공무원은”으로,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죄의”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며, 같은 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여부의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의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와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범죄보고)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구의회사무국의 <u>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u>과 <u>감사조사 업무 담당자</u>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u>소속 공무원</u>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보고) ①----- ----- -----<u>소속공무원은</u> ----- -----<u>공무원</u>----- ----- -----.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u>범죄</u>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u> 2. ~ 7. (생략) 〈신설〉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 <u>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u> ----- ----- ----- -----. 1. ----- ----- -----<u><단서 삭제></u>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

제7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사실을 확인 하였을 경우”라 함은 횡령 혐의자가 횡령 사실 및 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생략)

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7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실·국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 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 별 의 건			
협 의 개 요	실·국 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7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2. 목 적 :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사항
3.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 면 적 : 233,044㎡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기간을 단축하여 해제 가능. 다만, 국토교통부가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날에 종료

5.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6.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정하는 행위

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

-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라.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마.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사.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8. 열람기간 : 2014. 9. 18. ~ 10. 1.(공고일로부터 14일)**9. 열람장소(지형도면 등 게재 생략, 열람장소 관계도서 비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497), 남동구(☎ 032-453-295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76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	263	소3-2 구월동 635-4	- 구월동 64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지구
변경	소로	3	3	6	국지	263	소3-2 구월동 635-4	- 구월동 64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3	소로 3-3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1,109㎡) 변경(1,111㎡) 증(2㎡)	기존 지장물 저축구간 및 현황 도로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2)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공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시설명 및 위치

- 도시계획도로 : 남동구 고잔동 465-10번지 일원, 만수동 3-117번지 일원, 고잔동 465-15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8	15	국지 도로	1,590	중1-303호선 고잔동 491-1	대2-21호선 고잔동 161-7	일반 도로		89. 11. 08	고잔 지구
변경	중로	2	108	15	국지 도로	1,415	소1-10호선 고잔동 465-10	대2-21호선 고잔동 161-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36	15	국지 도로	831	중1-62호선 만수동 68-6	중1-10호선 장수동 산149-1	일반 도로		92. 02. 15	만수 지구
변경	중로	2	136	15	국지 도로	669	중1-62호선 만수동 68-6	소2-1호선 만수동 3-11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180	대3-21호선 고잔동 763-2	소1-7호선 고잔동 390-18	일반 도로		89. 11. 08	고잔 지구
변경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180	대3-21호선 고잔동 763-2	소1-7호선 고잔동 390-18	일반 도로			선형 변경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2-108	중로 2-108	•의회권고 노선해제(일부해제) -L=1,590m → L=1,415m(감 175m) -기점부 위치 변경 중1-303호선 고잔동491-1 → 소1-10호선 고잔동 465-10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로서 남동구 의회 권고에 따라 시설해제
중로 2-136	중로 2-136	•의회권고 노선해제(일부해제) -L=831m → L=669m(감 162m) -종점부 위치 변경 중1-10호선 장수동 산149-1 → 소2-1호선 만수동 3-117	
소로 1-10	소로 1-10	•의회권고 노선해제(선형정리) -L=1,590m ,B=10m (변경없음) -위치 : 대3-21호선~소1-7호선 (변경없음)	•의회권고 해제시설 •소래논현도시개발에 따른 일부 해제된 구간으로 가각부 잔여지를 시설해제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481호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34호(2014. 6. 2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중2-767호선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중2-767호선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주)한화 / (주)화인파트너스
-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69-12일원
- 라. 면 적 : 3,743.6㎡
- 마. 개 발 기 간 : 2014 ~ 2015. 6. 30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 「(주)한화 / (주)화인파트너스」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8층
(전화 : 032-446-4934, 전송 : 032-441-5661)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 : 032-453-2991)

나. 열람기간 : 2014년 9월 22일 ~ 10월 14일(15일간 :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주)한화 / (주)화인파트너스」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2014년 11월 전후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주)한화 / (주)화인파트너스」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전감정평가 업자명 :

토지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주)한화 / (주)화인파트너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관리 종류	성명	주소	
1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09-4	장	988	988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2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09-3	임	1,954	1,954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3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09-5	임	1	1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4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4-13	전	814	814	유진기업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52-6	근저당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종로대기업알앤 센터)	
5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4-35	전	36	36	유진기업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52-6	근저당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종로대기업알앤 센터)	
6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4-36	전	252	252	유진기업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52-6	근저당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종로대기업알앤 센터)	
7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4-37	전	33	33	유진기업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52-6	근저당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종로대기업알앤 센터)	
8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9-12	장	119	119	희성산업 개발주식 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0-2	근저당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종로5가지점)	
9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9-13	장	114	114	희성산업 개발주식 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0-2	근저당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종로5가지점)	
10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9-14	장	47	47	희성산업 개발주식 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0-2	근저당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종로5가지점)	
11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269-15	장	293	293	희성산업 개발주식 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0-2	근저당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종로5가지점)	
12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532-39	도	197	197	국 (기획재정 부)					
13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532-40	도	6	6	국 (기획재정 부)					
14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532-13	도	12	12	국 (기획재정 부)					
15	인천시 남동구 남현동	532-41	도	1	1	국 (기획재정 부)					
합계		15필지		4,867	4,867						

이 의 신 청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이의 내용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 합니다. 2014. . .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4 - 55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9. 23.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9. 12 ~ 2014. 9. 22(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간석1-529	빠라빠리뽕	신*미	구월로50번길 35, 1층 일부(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2014.07.31	2014.09.23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9. 2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4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소 공고 제2014 - 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2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6조제2항)
 - 총무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0,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7
----------	------

발의연월일 : 2014. 9. 18.

발 의 자 : 최재현

찬 성 자 :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2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6조제2항)

- 총무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동구 의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경제환경국, 안전행정국, 남동문화예술회관 및 지식정보센터”를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으로 하고 제2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남동체육관”을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다.(생략)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u>경제환경국, 안전행정국, 남동문화예술회관 및 지식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 다.(생략)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u>남동체육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생략)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의회운영위원회 가.~다.(생략)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u>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u> <u>에 속하는 사항</u> 나. ~ 다.(생략)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u>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2014 - 111호

2014년도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실시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성 제고
- 가축전염병의 발생 미연방지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실시지역 : 남동구 전지역

☐ 실시기간 : 2014. 10. 1. ~ 10. 17. (17일간)

☐ 질병의 종류 및 대상가축

- 소 : 소탄저기종저,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소설사병
- 돼지 : 돼지열병·단독, 돼지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병
- 개 : 광견병
- 닭 : 뉴캐슬병

☐ 특이사항

-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으로 내방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백신 부족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

□ 시술자 : 관내 공개업수의사 21명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덕수동물병원	구월1동 1206-5 1층	467-8575	구월동
쿨펫동물병원	구월1동 1130 홈플러스 지하2층	437-7582	
자연동물병원	구월4동 1240-3	468-6406	
다비드동물병원	구월4동 1271-11	464-1475	
주주동물병원	간석1동 343-5	442-9111	간석동
동암동물병원	간석1동 570-5	437-5535	
24시독스동물병원	간석2동 210-2	432-0075	
도그인동물병원	간석3동 914	433-3440	
세우리동물병원	간석3동 921-15	463-9066	
마이펫동물병원	간석4동 216-4	428-8275	
젼마동물병원	만수1동 948-4	464-4488	만수동
신진동물병원	만수1동 961-31	463-8801	
좋은친구들동물병원	만수2동 869-11	469-7782	
신세계동물병원	만수5동 897-2 105호	468-7533	
행복한동물병원	만수5동 916-2	469-7588	
길 동물병원	만수5동 889-15	467-1275	
만수동물병원	만수6동 1025-11	467-8450	
해맑은동물병원	만수6동 1079-3	469-8275	
에코동물병원	논현동 608-3 선하우스 1층	666-7282	논현동
해피동물병원	논현동 619-15(3B4L) 1층	439-8822	
한화동물병원	논현동 733-5	441-7582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안내

남동구청에서는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접종계획 : 1,500두
2. 접종기간 : 2014. 10. 1. ~ 10. 17. (17일간)
3. 접종대상 : 개(애완견 포함)
4.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5. 접 종 비 : 1,500원
6. 실 시 자 : 동물병원 수의사
7. 문 의 처 : 남동구청 농수산개발과(☎453-2700)
8. 동별 실시계획

동 별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명(전화)	비고
합 계	21개소	
구월동	덕수(467-8575), 자연(468-6406), 다비드(464-1475), 쿨펫동물병원(437-7582)	
간석동	24시독스(432-0075), 마이펫(428-8275), 도그인(433-3440), 세우리(463-9066), 동암(437-5535), 주주(442-9111)	
만수동	신진(463-8801), 켄마(464-4488) 신세계(468-7533), 행복한종합(469-7588), 만수(467-8450) 해맑은(469-8275), 좋은친구들(469-7782), 길(467-1275)	
논현동	에코(666-7282), 해피(439-8822), 한화(441-7582)	

주) 1. 각 동물병원에서 선착순 접종하니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은 매년 1회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2. 계획된 사업물량 초과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담당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아 1년이상 보관하고,
반드시 옥내에서 묶어 길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2014 - 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5의 6건(구월보금자리)

연번	종전주소 (블럭)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A-1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5	201407 25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 8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5를 건물번호로 부여
2	A-2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공원로	9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 9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S-1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로	55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선수촌을 인용하여 제명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5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S-2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로	75			건물등의 주된출입구가 선수촌로 7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5를 건물번호로 부여
5	B-1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로	5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5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을 건물번호로 부여
6	B-2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로	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2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7을 건물번호로 부여
7	B-3BL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로	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을 건물번호로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A-1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5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 8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5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A-2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96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 9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S-1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55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5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S-2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75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7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5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B-1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56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5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B-2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27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2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7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B-3BL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8	20140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을 인용하여 제명	2014.09.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로 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을 건물번호로 부여	